



# 2025 꿈의 무용단 청주 신규 단원 모집

'꿈의 무용단'은 자신의 이야기(세계)를 담은 춤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가치관, 정체성, 미래 역량 발굴 등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꿈의 무용단 '청주'에서 2025년을 함께 꾸려나갈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초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교육개요

- 교육명 : 2025 꿈의 무용단
- 교육기간 : 2025. 4. ~11. / 매주 화, 목 16:00 ~ 18:00 (2시간)
- 교육장소 : 동부창고 35동
- 교육대상 : 지역 내 사회 통합 범주 대상 및 일반 아동, 청소년 (초3 ~ 초6)
- 교육인원 : 총 30명 (신규단원 15, 기존단원 15)
- 교육비 : 전 과정 무료
- 교육내용 : 아동·청소년들이 즐겁게 춤추며 주체적으로 창작활동을 해나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꿈의 무용단은

- 꿈의 무용단은 만남-이해-탐색-발견의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 각자 만들어 낸 춤을 하나의 작품(레퍼토리)으로 개발하여 표현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를 연결합니다.
- 무대 공연을 올리는 경험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고 타인과의 소통강화, 공동체성 제고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5. 3. 12.(화) ~ 2025. 4. 3.(목) / 23일간
- 모집인원 : 총 15명(일반 7명, 사회통합 8명) ※ 2024년도 기존 단원: 15명

### \* 사회통합계층 50% 우선선발

- \* 중도포기자 발생 대비 예비참여자 3~5명 추가 선정 예정
  - 예비참여자 선정 여부는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대상 : 사회통합계층 포함 청주시 소재 초등학생 (초3 ~ 초6)
  - (필수) 개강식(4/15) 및 정기공연(11월 예정) 참여가 가능한 자
  - (필수) 춤에 관심이 있는 활동적인 학생
  - (우대) 사회통합계층 아동 우선선발

###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뒷자리 삭제)
- 보호자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초상 이용 동의서 1부
- 사회통합범주 대상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사회통합계층 범주

구분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증명서	9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 증명서
2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0	다자녀 가정의 자녀 (2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3	조손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1	보훈자의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4	소년·소녀 가장	가족관계증명서	12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5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13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재원 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6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4	학교장 추천자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7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15	자치단체장 추천자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8	도서벽지 거주자	재학증명서	16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7	학교 밖 청소년	재적 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수험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단원모집 세부사항 참고

※ 신규 단원에 선정된 후라도 신규 단원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 저조 및 낮은 출석률, 보호자 비협조, 본인 의사 결정 등의 원인으로 탈퇴 조치 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25. 3. 12.(수) ~ 4. 3.(목) 13:00까지
- 접수방법 : [dance\\_cheongju@naver.com](mailto:dance_cheongju@naver.com) 이메일 접수
  - 지원 서류 1부, 각종 동의서 1부, 사회통합계층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1부 제출
- ※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에 [꿈의무용단 '청주' \_이름]을 기재하여 발송 요망
- 문의처 : 문화예술팀 043-715-6962

□ 모집절차 ※재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No	1	2	3	4	5
내용	지원기간	인터뷰 대상자 발표	인터뷰(대면)	최종 선정자 발표	개강식
일정	2025. 3. 12.(수) ~ 2025. 4. 3.(목)	2025. 4. 4.(금)	2025. 4. 8.(화)	2025. 4. 9.(수)	2025. 4. 15.(화)

※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일정 및 최종 선정자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예정

## □ 선발기준

합계	꿈의 무용단 사업 이해도	무용에 대한 관심 및 경험	활동의지
100점	30점	35점	35점

※ 3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 시 참여대상에서 제외

※ [사회통합계층 : 하단 사회통합계층 세부사항 참고, 면접심사 시 증빙서류 지참](#)

## □ 교육 지원 내용

- 교육비 전액 무료
- 간식 제공
- 연습복, 무대의상 등 공연을 위한 사항 지원
- 공연 관람, 특별공연, 정기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 □ 기타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필수 제출서류)에 누락이 있을 경우, 인터뷰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적격여부 부적합,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작성 미비,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중 교육운영관리를 위해 연락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있으며,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 선발 단원이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단원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는 비공개이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계층 유형별 세부사항

구분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증빙자료 행정복지센터/정부24 발급 가능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증빙자료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 (단위: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h>7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기준중위소득(50%)</td> <td>1,114,223</td> <td>1,841,305</td> <td>2,357,329</td> <td>2,864,957</td> <td>3,347,868</td> <td>3,809,185</td> <td>4,257,497</td> </tr> </tbody> </table>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조손 가정의 자녀	-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소년·소녀 가장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고 소년 소녀의 수입에 의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 일반 모자가족(모가 세대주) 또는 부자가족(부가 세대주)과는 구분 필요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간지역/낙도/수복지구/접적지구/광산지구를 말함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자녀」																
보훈자의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구분	내용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p>「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p> <p>-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p>																																																																
학교장 추천자	<p>·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추천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 기관별 5명 이하까지 가능</p>																																																																
자치단체장 추천자	<p>-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p> <p>-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p> <p>-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p> <p>-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p>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p>「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거주 대상자</p> <p style="text-align: center;">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24.6. 기준/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p> <table border="1" data-bbox="379 862 1423 1411"> <thead> <tr> <th>부산 (3)</th> <th>동구 서구 영도구</th> <th>대구 (2)</th> <th>남구 서구 군위군</th> <th>인천 (2)</th> <th>강 화 군 옹진군</th> <th>경기 (2)</th> <th>가 평 군 연천군</th> </tr> </thead> <tbody> <tr> <td>강원 (12)</td> <td colspan="7">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td> </tr> <tr> <td>충북 (6)</td> <td colspan="7">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td> </tr> <tr> <td>충남 (9)</td> <td colspan="7">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td> </tr> <tr> <td>전북 (10)</td> <td colspan="7">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td> </tr> <tr> <td>전남 (16)</td> <td colspan="7">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td> </tr> <tr> <td>경북 (16)</td> <td colspan="7">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td> </tr> <tr> <td>경남 (11)</td> <td colspan="7">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td> </tr> </tbody> </table>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	강 화 군 옹진군	경기 (2)	가 평 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	강 화 군 옹진군	경기 (2)	가 평 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학교 밖 청소년	<p>「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p> <p>-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p> <p>-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p> <p>-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p>																																																																
<p>▶ 서류 발급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복지포(www.bokjiro.go.kr) 참고</p>																																																																	